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posco
포스코GY솔루션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Compliance Guide Book

www.poscogysolution.com

<목 차>

1. CEO 메시지 4
2. CP 의 개념 6
3. CP 구성의 8 대 핵심 요소 7
4.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 구성 및 역할 9
5. CP 등급평가 제도 10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 목적 및 입법취지 11
    · 특성 11
    · 적용범위 12
    · 법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내용 16
    · 원사업자 의무사항 19
    · 원사업자 금지사항 39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5
    · 목적 및 입법취지 55
    · 주요내용 55
    ·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56
    ·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57
    · 부당한 지원행위 100
  3)상생협력법 113
    · 납품대금연동제 Q&A 117
7.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공정거래법[부당한공동행위] 133
  2)공정거래법[부당한지원] 137
  3)하도급법 140
  4)상생협력법 143
8. 공정거래 상담 및 신고채널 안내 144

CEO Message

반갑습니다. 포스코GY솔루션 대표이사 이영걸입니다.

우리 포스코GY솔루션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라고 함)을 도입하여 공정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법적, 윤리적 위험성을 사전예방하고 공정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회사의 특정 부서만이 아닌 모든 임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견고하게 정착되어 청렴한 생각을 가지고 투명하게 실천하는 포스코GY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GY솔루션 대표이사 이 영 걸

개정 이력

개정일	제/개정 이력	개정 내용	비고
2024.	제정	최초 작성	
2024	개정	공정거래법 신설	
2025	개정	상생협력법, 체크리스트 신설	

CP의 개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CP의 필요성

[1]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

[2]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예방

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이러한 손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3]대내외 신인도 제고

-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4]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P구성의 8대 핵심요소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경영 정책의 중요한 요소임을 행동강령이나 준수정책을 통해 공식적 문서로써 조직 내·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경쟁법 자율준수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며,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조직 규모에 적합한 인적·물적 자원이 제공되는 등 최고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최고경영자가 아닌 임원을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며, 이러한 사실을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과 활용

- 회사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야 하고,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특히 최신 공정거래 관련법 내용과 심결례 변경사항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해야 한다.

5.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기업 내부에 자율준수 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경쟁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최고경영자 및 임원(자율준수관리자 포함) 그리고 법 위반 행

위의 가능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는 보다 집중적이고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 향상 및 법 위반을 최소화해야 한다.

6. 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감시체계 구축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법 위반 발생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내부감독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여야 한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법 위반 행위를 기업 스스로가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 구성 및 역할

[1]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① CP 기획, 운영 및 감독

② CP 평가·개선 및 운영현황 보고

③ 기타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2]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

①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 자문

②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서간의 업무 조정

③ 위원별 담당부문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및 감독, 그 결과를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통보

④ 각 위원별 담당부문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

⑤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3]CP주관부서의 역할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②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 작성, 보고 및 시행

③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된 사내업무에 대한 지원활동

④ CP운영상의 실무처리 및 CP 효과성 평가

⑤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

⑥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주관

⑦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개정 및 배포

⑧ 공정거래 관련 모니터링 및 감사

⑨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이행

CP 등급평가제도

- CP 등급평가는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

- CP 8대 기준을 CP의 구축, 확산, 운영 등을 평가한 후 AAA(최우수), AA(우수), A(비교적 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로 등급을 부여함

분류	평가항목
Ⅰ. Construction (CP의 구축)	C1.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Ⅱ. Diffusion (CP의 전파 및 확산)	D1. 자율준수 편람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Ⅲ. Operation (CP의 운영)	O1. 사전감시 체계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Ⅳ. Evaluation & Feedback (평가와 피드백)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등급별 인센티브

CP등급 (유효기간 2년)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등급 평가증 수여	위원장 표창
AAA(최우수)	2년	면제	O	2년 연속 취득시
AA(우수)	1년 6개월	감경	O	2년 연속 취득시
A(비교적 우수)	1년	감경	O	-
B(보통)	-	-	-	-
C(미흡)	-	-	-	-
D(매우미흡)	-	-	-	-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1. 목적 및 입법취지

1)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2. 특성

1) 민법 내지 상법의 특별법

- 하도급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2)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우선 적용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건설산업기본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과 중복 적용가능하다. 단, 위 법 내용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된다.

4)「하도급법」은 국내법

- 발주자가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가

진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3. 적용범위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 제2조 1항」

1) 건설위탁 「법 제2조 9항」

- 건설업자가 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①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나.「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라.「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자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③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모델하우스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 건설위탁이 아닌 경우

- 무면허건설업자와의 거래(경미한 공사는 제외)

- 전기공사업 면허사업자가 해당 면허가 없는 전문건설업자와 거래

- 건설장비임대차(포크레인 등)

2) 제조위탁 「법 제2조 6항」

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가. 물품의 제조　　나. 물품의 판매　　다. 물품의 수리　　라. 건설

②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제조위탁에 해당될 수 있음

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물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의해 특수한 용도로 주문 제작한 것 : 가드레일, 표지판, 갑문, 엘리베이터 등

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 : 레미콘, 아스콘 등

다.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 :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라. 규격·표준화된 자재라도 특별히 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는 해당

마. 단순한 건설자재인 시멘트, 자갈, 모래는 제외되나 규격·품질 등을 지정하여 골재 등을 제조위탁하거나 석산 등을 제공하여 임가공위탁 하는 경우는 해당됨

③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수리·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 포함).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 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 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

다.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 등

라.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마.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임)가공

※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간주

3) 용역위탁 「법 제2조 11항」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이 경우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함

①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가. 정보프로그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나 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조합된 것

나.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 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

다.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체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디자인, 상표, 설계도면 등)

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성과물

② 역무의 공급위탁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설계 제외)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활동

라.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 장소, 경비 등의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마.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4) 적용대상 사업자 「법 제2조 2항, 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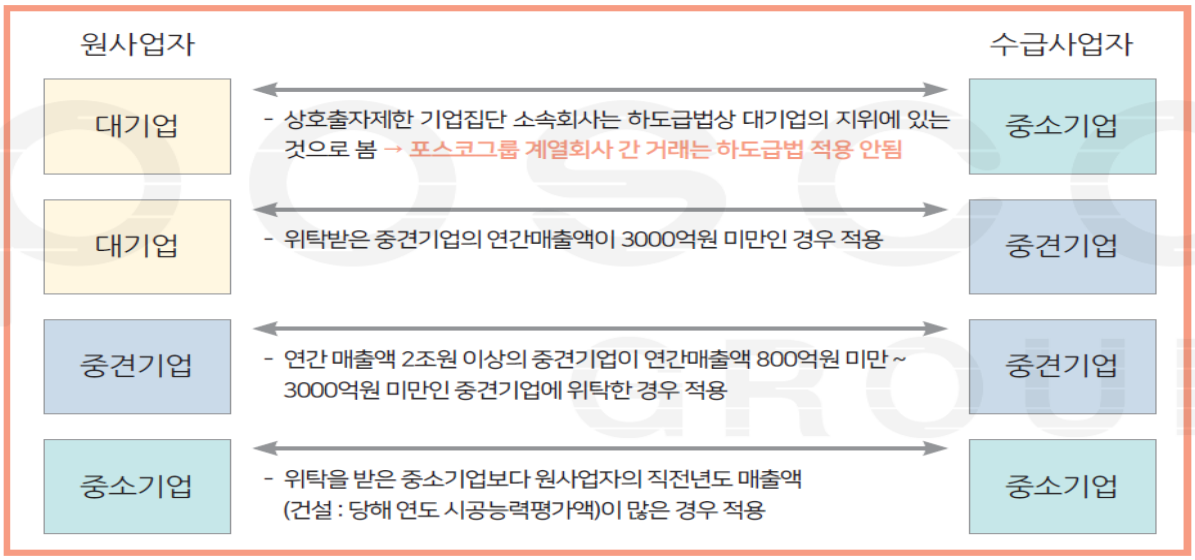

① 중소기업 정의

가. 제조·서비스 업종별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3개년 평균·연간매출액 4백억원 이하 ~ 1천5백억원 이하

나. 건설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3개년 평균·연간매출 1천억원 이하

② 중견기업 정의

-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아닌 기업

※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보호되는 경우

(1)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이하 '대기업')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2)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5) 적용제외대상 중소기업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4항」

- 연간매출액(시공능력 평가액)이 일정규모 미만 중소기업은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

위탁 유형	연간 매출액 (건설위탁 : 시공능력평가액)
용역위탁	10억원 미만
제조·수리위탁	30억원 미만
건설위탁	45억원 미만

6) 법 적용대상 기간 「법 제23조」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단,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 당사자가 분쟁 조정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하다.

※ 거래종료일

(1) 제조·수리 및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2)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3) 건설위탁 :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4)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4. 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내용

구 분	제 재 내 용
행정적 제재	1) 시정조치 : 시정명령, 시정권고, 특약 삭제나 수정 등 2)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3)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법 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 기술유용 행위는 최대 5억원까지 부과) 4) 상습 법위반자 명단 공표 (경고 이상의 조치 3회 이상 사업자 누산점수 4점 초과) 5) 입찰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 및 영업정지(3년간 벌점 10점 초과)

행정질서벌 (과태료)	1) 출석처분 위반, 허위 자료 제출 : 사업자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 2) 조사 방해, 거부 : 사업자 2억원 이하, 개인 5천만원 이하 3) 수급사업자 자료 제출 방해 : 사업자 5천만원 이하, 개인 500만원 이하 4) 서면실태조사 : 사업자 500만원 이하
형사적 제재	1)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2)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② 부당경영간섭 및 탈법행위 금지 위반자 3)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 4) 고발(법위반 3회 이상 및 벌점 4점 초과) 5)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민사적 제재	- 손해배상 책임 : 발생한 손해의 3배 이하 배상 책임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②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이나 인수거부 금지 ③ 부당반품 금지 ④ 감액 금지 ⑤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⑥ 보복조치 금지

벌점 부과기준

-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3항

부과기준		벌점
경고	(서면실태조사)	0.25점
경고	(신고 or 직권인지)	0.5점

시정권고, 자진시정 & 재발방지명령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과징금	(부당한 대금결정, 감액금지, 보복조치금지, 기술자료 요구금지)	2.6점
고발		3.0점
고발	(부당한 대금결정, 감액금지, 보복조치금지, 기술자료 요구금지)	5.1점

벌점 경감기준

- 벌점의 경감은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3항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

유형	경감점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	90% 이상 : 2점 70% 이상 ~ 90% 미만 : 1점
현금결제비율	100% 이상 : 1점 80% 이상 ~ 100% 미만 : 0.5점
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등급	최우수 : 2점 우 수 : 1점
공정위 모범업체 선정	3점

협약평가결과 (동반성장협약, 평가 양호 이상)	최우수 : 3점 우 수 : 2점 양 호 : 1점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활용 (대금 직접 지급)	50% 이상 : 1점 50% 미만 : 0.5점
수급사업자 피해 자발적 구제	(공정위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름)

5. 원사업자 의무사항

의무사항	유의 거래단계	내 용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제3조)	계약체결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는 7년)간 보존해야 함
선급금 지급 의무 (제6조)	대금지급 단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때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제9조)	계약이행 단계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제13조)	대금지급 단계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건설공사 대급지금 보증의무 (제13조의2)	계약체결 단계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함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제16조)	대금지급 단계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때에는 그 추가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제16조의2)	대금지급 단계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공급원가의 가격 변동,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납품시기 지연으로 관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① 서면의 발금 「법 제3조 1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중요 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가. 중요 기재사항 「하도급법 시행령」제3조

가)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목적물)의 내용

나)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다)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라)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조정금액 등)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바) 「법 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서면의 발급시기 : 사전 발급

가)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나)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다)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라)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예외적으로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발급 가능「법 제3조 ③항」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발급이 가능하나,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 해당 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 하여야 함「법 제3조 ④항」

다. 업무 시 유의사항

가 능	-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기본계약서(개별계약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주문서, 발주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VAN 또는 전산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면 발급을 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 서면 교부시 미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여도,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 보충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불 가 능	-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하여 기재하는 경우 - 제조·수리·건설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 전산으로 발주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 발주처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 다툼으로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미발급하는 경우(서면 미발급에 해당) -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판단하여, 연장된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 증거인멸을 의도로 하도급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경우 -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등을 3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② 하도급계약 추정제 「법 제3조 5항, 6항」

- 원사업자가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가. 일정한 사항

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내용

나) 하도급대금

다)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마)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나. 통지와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문서의 경우 전자서명 날인 및 공인전자주소 이용시 인정)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함

가)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의 성립을 서면으로 확인, 향후 분쟁에 대비 가능

나)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의 불성립을 확인하고 작업중단, 하도급업체의 손해 예방 가능

다) 회신이 없는 경우 : 계약 성립 추정, 추후 분쟁 발생시 소송 등을 통한 구제 가능

③ 서류의 보존 「법 제3조 9항」

가. 보존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제6조

가) 제조 등의 위탁 목적물의 물품수령증명서

나)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등이 기록된 서류

라)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록된 서류

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등이 기록된 서류

바)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목적물의 물량, 감액금액 등을 기록한 서류

사)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

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자) 「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차)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나. 보존기간「하도급법 시행령」제6조2항

-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단, 기술자료 제공 요구 서류는 7년간 보존)

다.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서류의 양이 방대하여 보존이 어려워 마이크로필름, 컴퓨터디스켓 등의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
불 가 능	-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지불 전의 관계 서류(검수관계, 반품관계,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를 파기하는 경우 - 계약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원본을 파기하는 경우

2) 선급금 지금 의무

① 선급금 지급이란?

- 발주자가 위탁하면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의 착수를 쉽게 하기 위해 원재료를 구매하거나 노무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러한 선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② 선급금의 지급「법 제6조」

가.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만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지연 제출하여 원사업자가 선급금의 법정지급 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은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③ 적용기준

가. 선급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액 산정기준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내역(용도, 지급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다음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 지급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용도와 각 항목별 비율을 지정받아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 : 그 용도와 항목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선급금을 공종별, 품목별로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았는데 하도급내용은 공종이나 품목과는 관련이 없어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였으나, 보증서를 지연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선급금 지연 지급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미제출하여 선급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불 가 능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한 경우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계약서상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혹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한 경우(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①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법 제9조」

가. 수급사업자가 납품·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나.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기준

가. 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제3의 공인기관 등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날,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날을 말한다.

다. 검사결과의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않음

나)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라.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③ 대량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 제조업에서 대량 납품의 경우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납품완료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④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제조공정에서 나타난 불량을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적법하게 대금을 공제하기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제조업에서 대량 납품에 따른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시 계약서에 반품 관련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반품 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품 후에도 반품 가능

불 가 능	- 원사업자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사할 경우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했으나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타당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 검사기준, 방법 및 시기를 정한 이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는 경우 - 검사기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통상 적용되는 검사기준보다 매우 엄격하게 정해서 통상적으로는 합격판정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불량품의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기성청구 또는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통지를 원사업자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한 경우 - 검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법정검사기일 이후에는 반품이나 불량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4)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①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등 「법 제13조」

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1항」

나.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간주한다. 「법 제13조 2항」

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3항」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법 제13조 4항」

마.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면 안 된다. 「법 제 13조 5항」

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 받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6항」

사.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하도급대금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7항」

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10항」

② 적용기준
가.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가)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다.

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라)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a.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b.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 기준

a. 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이며,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

b.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c.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d.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나. 현금 결제비율 유지 적용기준

가) 현금비율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 수령액

b.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대금지급액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의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간주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방법

가) 어음할인율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3조 9항」

- 고시 어음할인율 : 연 7.5% (2015.10.23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액수 X 할인율 X 지연일수/365

나) 지연이자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I.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 고시 지연이율 : 연 15.5% (2015.7.1 ~)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 X 지연이율 X 지연일수/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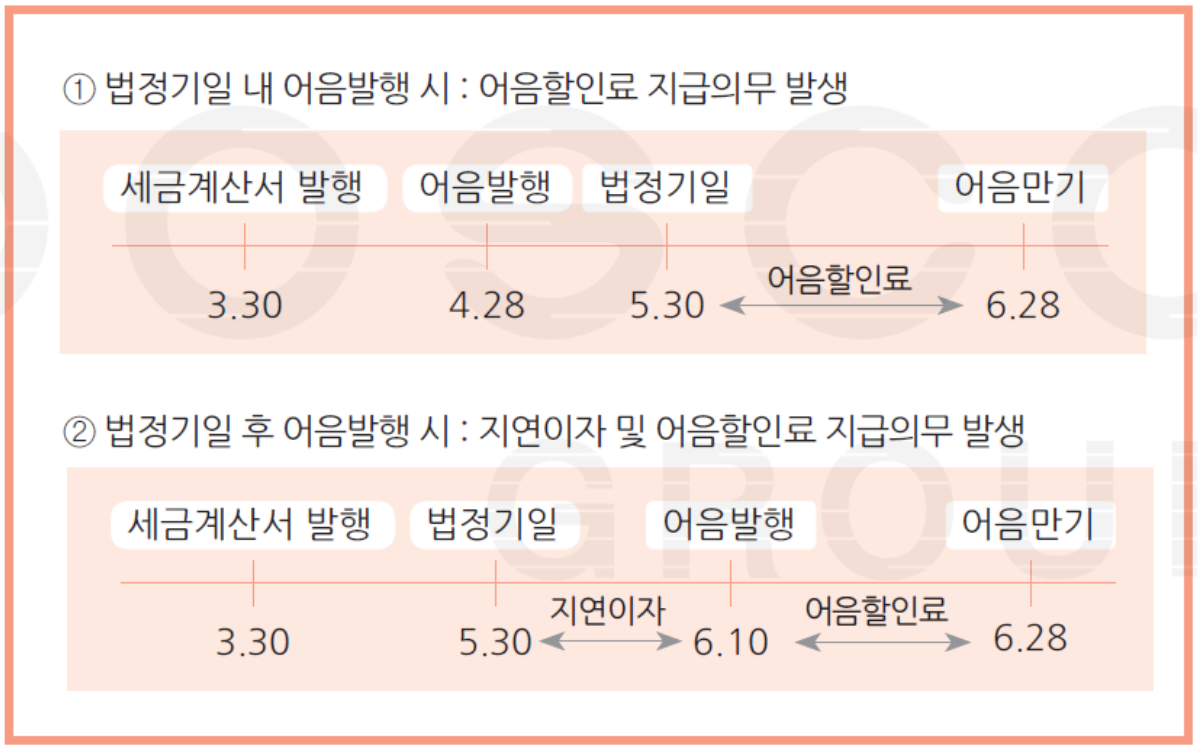

③ 업무시 유의사항

불 가 능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 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월 1·2회 납품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 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잡는 경우 - 하자이행을 목적으로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보하는 경우

5)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①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법 제13조의2」
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2 1항」

나.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13조의2 2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 계속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법 제 13조의2 3항」

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법 제13조의 2 4항」

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법 제13조의2 5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바. 보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법 제13조의2 6항」

가) 원사업자가 금융거래 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나)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에 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사.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다. 「법 제13조의2 7항」

아.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13조의2 9항」

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법 제13조의2 10항」

② 적용기준

가. 종전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승계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계 당시의 잔여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단, 추가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않는다.

라. 하도급대금 보증금액 범위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월수)] X 4

·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 - 선급금) / 공사기간(월수)] X 기성금 지급주기(월수) X 2

③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1항」

가.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하도급 대금지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④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의 하도급대금에 대해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불 가 능	-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자신은 보증서를 교부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는 계약이행 보증으로 현금을 예치토록 하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면제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의 보증 의무 면제를 악용하여 하도급공사를 세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도급법상 탈법행위) - 원사업자 자체발주공사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로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경우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①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법 제16조」
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법 제16조 1항」

나. 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2항」

다. 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3항」

라. 원사업자가 1항의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 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6항·7항·9항 및 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날부터 15일'로 본다. 「법 제16조 4항」

② 적용기준
가. 적용요건
가) 제조·건설위탁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했어야 한다.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 변동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이어

야 한다.

나. 조정기준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하다.

다)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 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라. 조정금액 지급시기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③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은 시점 이전의 하도급계약 공사에 대하여 조정 기준시점 이후의 하도급 공기, 납기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 - 하도급계약 시점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일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하면서 당해연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시점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고 무조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님

불 가 능	-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수령받고도 이를 미지급 하는 행위 또는 받은 비율 또는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조정받고도 15일을 초과한 날까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조정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조정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지연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금액을 수령하고서도 15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①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법 제16조의2」
가.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사항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6조의2 1항」
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16조의2 2항」

다.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의 2 3항」

라. 1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2항에 따른 협의를 조합에 신청한 경우 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1항 또는 3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 「법 제16조의2 4항」

마.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조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법 제16조의2 5

항」

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나 조합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안 된다. 「법 제16조의 2 7항」

사.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거나,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힐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조합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6조의 2 8항」

※ 기존 신청권만 가지고 있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협의 결렬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

※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의 범위 규정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② 적용기준
가. 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후(비하도급거래는 제외)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가능하다.

나.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정신청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조정의무가 발생함

다. 공사 저가수주에 따른 단순 적자보전 사항은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공급원가 변동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

라. 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 2항」

가)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 10%

나)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다)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7%로 함

라)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마)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 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조정신청이 가능한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 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에 한정됨(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정신청권이 없음)

③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수급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한 경우(법 위반은 아님) -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이 있어 조정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는 경우
불 가 능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협상 요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6. 원사업자 금지사항

의무사항	유의 거래단계	내 용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제4조)	계약체결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제11조)	계약이행 단계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제8조)	계약이행 단계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됨
부당반품금지 (제10조)	계약이행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반품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술자료 제공 유구 금지 등 (제12조의 3)	계약이행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제19조, 제20조)	기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거래 위반 행위 등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	계약체결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5조)	계약이행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교구 금지 (제12조, 제12조의2)	계약이행, 대금지급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7조)	대금지급 단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8조)	기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감액 금지, 부당 위탁취소 금지, 부당반품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보복조치 금지

-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위 처분에 더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

→ 「법 제35조 2항」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경제적 이득,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단 한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법 제4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할 수 없다. 「법 제4조 1항」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 「법 제4조 2항」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나.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라.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마.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란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전력비, 수도 광열비 등)과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정경비(산재보험료, 공용 보험료 등)는 제외한다.

사.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아.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적용기준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 및 가격의 부당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두 요건은 상호보완적으로 부당성이 큰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낮추어서, 부당성이 적은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게 된다.

나. 행위의 부당성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가)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나) 원사업자가 기망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

등

다. 가격의 부당성 :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

※ ‘낮은 가격’이란 시장 평균가격과의 괴리정도, 원재료 등의 가격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취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단가 결정 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④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경영상황,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하는 경우
불 가 능	- 자재(원부자재 포함)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실행예산 범 위내로 시공하여야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건설 등을 위탁한 후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 또는 부대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서상 직접공사비 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시 단 한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① 감액금지 「법 제11조」
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법 제11조 1항」

나.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법하다.

※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 하도급대금을 감액시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법 제 11조 3항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2」

라. 감액서면 표준서식 확인 경로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하도급법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 [별표7]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內 별지3

②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 2항」
가)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나)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당해 합의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감액하는 행위

다)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라)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마)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

바)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사)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내역과 실제 시공한 공사내역에 차이가 있어 실제 시공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대, 가불금, 장비임차료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최종 정산에 합의하여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 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
불 가 능	-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하도급계약 후 추가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 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원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계속적인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감액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달리 감액하는 경우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 한 후,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에까지 인하된 새 단가를 소급하는 경우 - 발주자의 발주취소,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 또는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 인하 등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3)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①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법 제8조」
가.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 된다. 「법 제8조 1항」

나.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검사완료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의 인수하여야 한다. 「법 제8조 2항」

다.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간주한다. 「법 제8조 3항」

②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가)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 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다)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라)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된 목적물의 제조 및 건설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기간내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

③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 정해진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여 지연 납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작업장에서 검사한 결과 기준에 상당히 미달된 하자품인 경우 - 발주서 및 시방서와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불 가 능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고는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위탁 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 통보하는 경우 - 발주자의 위탁취소 및 위탁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이미 수령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판매가 부진하자 새로 위탁한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부실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막연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무리한 납기를 설정하여 기간내 납기가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4) 부당 반품의 금지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① 부당 반품의 금지 「법 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 「법 제10조 1항」

②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반품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 2항」
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나)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다)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라)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③ 업무시 유의사항

가 능	- 납품받은 상품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하자 등이 있어 목적물 수령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인수한 목적물이 주문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 인수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인수 또는 수령한 목적물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반품 받아 자기가 당해 물품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여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불 가 능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불합격을 이유로 이를 반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5)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법 제12조의3」
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 3 1항」

나. 원사업자는 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

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 제12조의3 2항」

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법 제2조의3 3항」

라.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2조의3 4항」

② 적용기준
가. '기술자료' 「법 제2조 15항」

-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시공 또는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 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ex.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③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서면 기재 사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
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나.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다.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라.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마.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바.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사. 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 표준서식 확인 경로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하도급법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 [별표7]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內 별지4

④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

나.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

다.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로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

⑤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 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⑥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4」
가.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나.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다.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라.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마.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바.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배상

사.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방법 및 일자

⑦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가. 거래이전 단계

가)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나)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나. 거래 단계

가)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 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나)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 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출원하는 경우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다. 거래이후 단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⑧ 업무시 유의사항

불 가 능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구두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요구시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단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대가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이전 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기술을 공여한 경우 -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그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선출원하는 경우

6)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① 보복조치의 금지 「법 제19조」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보복조치 시 단 한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행위

다)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나. 업무시 유의사항

불 가 능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급사업자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등록을 제외 혹은 해체하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해 가격·품질·공기 등에 있어서 다른 수급사업자에 비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기회 제한 또는 거래를 단절하는 경우

② 탈법행위의 금지 「법 제20조」
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업무시 유의사항

불 가 능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경우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7)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부당한 특약의 금지 「법 제3조의 4」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적용기준
가.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의4 2항」

가)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다)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라)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약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a.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

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b.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c.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d.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e.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당특약' 약정

가)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Ex.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Ex.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Ex.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라)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Ex. 목적물 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마)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Ex.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1. 목적 및 입법취지

1)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업은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수있으며, 기업의 임직원들은 회사업무 수행시 회사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1) 경제력 집중 억제

- 사업자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경쟁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부당 가격 혹은 조건 부과 등을 의미한다.

3) 부당 공동행위 금지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낙찰자 등을 임의로 결정하는 행위 금지를 의미한다.

4)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인력, 비용 등 상당히 유리하게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반에 해당한다.

3.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1) 불공정거래행위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3조)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위의 유형을 7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1에서는 9가지 유형, 28가지 행위를 열거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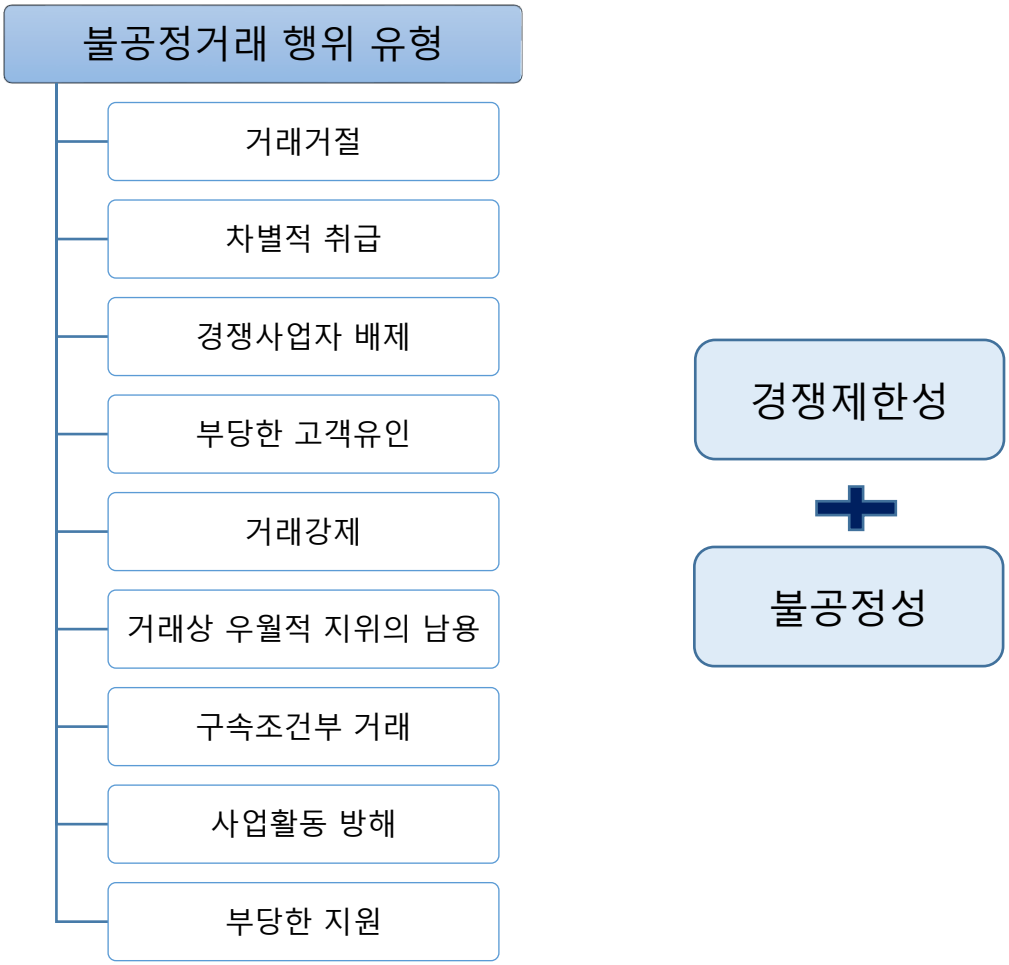

2) 위법성 판단기준

- 위법성의 핵심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공정거래 저해성에 있음.
- 공정거래저해성은 '부당하게'와 그 의미가 동일하며,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임.
  * 경쟁제한성 :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
  * 불공정성 :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
- 판례, 학설, 공정위 모두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행위유형별로 나눠 당해

행위의 특성, 거래당사자의 지위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3) 위반시 제재

구분	과징금	벌칙	비고
거래거절 - 사업활동 방해	관련 매출액의 2%이내 (매출에 없는 경우 5 억이내)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5 천만원 이하 벌금	동시적용 가능
부당지원 (특수관계인 포함)	관련 매출책의 5%이내 (매출에 없는 경우 20 억 이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원 이하 벌금	

4.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1) 부당한 거래거절

-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진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①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중단,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가. 제한되는 대상 행위

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나)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계속의 거절 등

다)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나)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아래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a. 재고 부족이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b.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수 있는 경우

c. 사업자들이 사전에 당해 사업행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거래자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d.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e. 공동의 거래거절에 디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② 기타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 중단,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가. 제한되는 대상 행위

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단독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나)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랭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됨.

다)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아니함.

나. 위법성 판단 기준

가) 거래거절 물품, 용역이 거래 상대방의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나) 대체 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다)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라)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등

마)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다. 합리적인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애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 할 수 없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이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 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다)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

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라)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 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

㉵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래한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중단 또는 수량을 현저히 제한하면 X.

※ 관련 사례 및 판례

사례1)

사실관계

- 포스코는 협력작업 계약에 따라, 화성기업(주)와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화성기업 대표에게 협력작업의 사업양도를 요규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계약 만료시점에 거래를 종료함.

공정위 판단

- 화성기업㈜는 포스코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를 포스코사업장에 투입하고있으며, 포스코 이외의 거래처 확보가 어려움으로 포스코는 화성기업㈜에 대하여 우월적지위에 있음.

사업양도를 강요한 행위는 위와 같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에 해당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계약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사항이나, 본 건은 협력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설비규모, 대체거래선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거래가 전제 또는 예상되는 계약관계로서 사업양도에 응하지 않자 타당한 사유 없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임을 통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함.

사례2)

사실관계

- 국내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는 사업자인 A는 A를 통해 고주파간암치료기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던 B사가 A사의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고, A사의 치료기와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B에 대한 거래를 중지함.

공정위 판단

- 대법원은 A와 B 간의 계약에서 B가 고주파간암치료기를 오로지 A로부터 공급받겠다는 취지의 독점적, 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B가 다른 제조사로부터 고주파간암치료기를 공급받는 것이 위 계약에 위반된다거나 자체 개발한 제품이 A의 고주파간암치료기와 유사제품이라 볼 수 없어 A의 거래거절에 위 치료기의 영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B로서는 국내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시장의 사정상 A의 거래거절 이후 대체공급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총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고주파간암치료기 판매영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기에 A의 거래거절은 B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한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4098판결)

※ Q&A

Q1. 계약만료에 따라 상대방 업체와 계약을 종료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A.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계약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사항이고, 계약만료 시점에 즈음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는 사전통보

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이는 매우 추상적인 해석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Case By Case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먼저, 계약으로 인해 상대방이 투입되는 인력과 설비규모, 대체 거래선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거래가 전제 또는 예상된다면 계약종료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음. 또한 우리와의 거래를 믿고 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이 큰 경우, 상대방과 이와 관련된 보상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서의 거래중단은 부당한 거래거절이 될 수 있음.

Q2. 본사가 정해준 가격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는 이유로 판매점과 거래를 중단하였다면?

A. 판매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제품 판매가격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며, 따라서 판매점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법 위반임.

또한 이를 이유로 거래거절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목적달성을 위한 거래거절로서 불법행위임.

Q3. 거래종료 당연사유가 아닌 회사 내 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정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는가?

A.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물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부여해야함.

2) 차별적 취급

-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거래 내용 등의 차별적 설정이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 법 위반임.

①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행위

*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 여기에는 항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도 포함됨.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가격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a.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b.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가격차별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c.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 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d.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수 있음.

<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a.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인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b. 가격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가격차별 대상인 거래상대방이 거래선을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c. 가격차별 정도가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 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d.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음.

-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a. 가격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b. 당해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격할인을 받는 사업자의 이

익, 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c. 가격차별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용역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태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태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입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 간의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

② 거래조건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가)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이는 가격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예 : 수량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을 말함.

나) 거래조건 차별은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자에 대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차별대상 사업자가 엄격하게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모든 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봄.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거래조건 차별이 당해 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 및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가격차별에 준하여 판단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의 상품·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 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역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가 대상이 됨.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되,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 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a.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등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 취급하는 경우

b.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c.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 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사 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 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④ 집단적 차별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차별취급이 대상이 됨. 부당한 공동행위와 달리 집단적 차별취급은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차별취급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음. 또한 실제로 차별행위가 행해져야 함.

나) 차별취급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이 포함됨.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집단적 차별행위의 위법성은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 함. 다만, 집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원칙적으로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비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 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행위

※ 관련 사례

사례1)
사실관계
-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하였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 처음으로 가공비 6.7% 인상함.

공정위 판단
- 위와 같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행위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의 상승은 업종에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이나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만 가공비를 인상하여 주는 행위는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부과.

사례2)
사실관계
- 포스코는 열연코일을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비계열사인 동부제강㈜ 등 5개사에게는 제품출고 전에 선수어음 및 외상 30일로 받는 반면 계열회사는 제품 출고 후 70일 만기어음으로 받음.

공정위 판단
- 위와 같은 포스코의 행위는 거래규모, 판매가격 등 제요인을 검토해볼 때, 경쟁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차별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위하여 판매대금 결제조건에 관하여 현저하게 차별취급한 행위로 인정됨.

※ Q&A

Q1. 동일한 제품을 경쟁이 낮은 곳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점에게 판매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가?

A.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은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수요가

매우 많은 지역에서 판매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있음.

Q2. 특정 판매점에게만 가격할인, 보조금 등 긴밀한 지원을 할 경우는?

A. 운송비 차이나 거래량의 다과에 따른 합리적인 거래조건 차별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판매점에게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다른 판매점이 그 판매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 가능성이 큼.

Q3. 계열회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상사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우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는가?

A. 물량 이외의 거래조건이 동일하다면 어느 상사에게 어느 정도 비율의 물량을 배정하는가는 자사의 재량이므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단, 계약기간 중 물량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Q4. 물품을 구입하면서 비계열회사인 A사가 계열회사인 B사보다 견적가격을 싸게 제시하였음에도 B사와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법 위반인가?

A. A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량률이 높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단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이 될 수 있음.

3) 경쟁사업자 배제

- A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량률이 높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단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이 될 수 있음.

① 부당염매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계속적 염매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

• 일시적 염매 :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더라도 합리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가. 대상 행위

가) 부당염매에는 계속적 염매와 일시적 염매가 있음.

나) 계속적 염매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말함.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 여부는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함. 제조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 제조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매입원가는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계열회사관계나 제휴관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 간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수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수 있음.

다) 일시적 염매란 일회 또는 단기간(1주일이내)에 걸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함.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속적 염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함.

라) 부당염매는 유인염매 또는 할인특매와는 구별됨. 유인염매란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덤핑판매를 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종전과 같이 하거나 상향조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함. 이는 판촉전략의 하나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는 구별됨. 한편, 할인특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염매와 구별됨. 첫째,할인특매는 공시의 방법으로 실시기간이 확정되는 등 기간이 확정적인 점. 둘째, 할인특매는 경쟁사업자 배제의도 보다는 계절상품의 처리, 불경기 등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점 등임.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염매행위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란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고 실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것을 요구하지 않음.

나) 계속적 염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봄. 그러나, 계속적 염매를 한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하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a. 당해 시장에 진입장벽(예 : 규모의 경제, 사업영위 인허가, 거래비용 등)이 없어 계속적 염매로 인해 현재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될 수 있는 경우

b.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c.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염매로 판매하는 경우

d.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e.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f. 계속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g. 계속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다) 일시적 염매의 경우,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이 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a. 염매행위를 하는 동기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는데 있는지 여부

b.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거나 부도 등의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c. 당해 시장의 경쟁구조. 당해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가 적고, 집중도가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클 수 있음.

d. 진입장벽 유무 등. 규모의 경제·사업영위 인허가 등 요소가 없어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현재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더라도 신규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되므로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없거나 미미하게 됨.

- 일시적 염매의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a.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b.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판매하는 경우

c.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d.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e. 일시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f. 일시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에의 신규진입이 단기간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② 부당고가매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통상 거래가격이라 함은 당시의 시장에서 사업자 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을 말함. 인위적으로 제품이나 원재료의 품귀를 발생시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점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물량이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므로, 고가매입이 계속 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고가매입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품귀를 가져옴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나) 이 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a. 고가매입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b.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이 원활한지 여부와 다른 대체재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 대체재가 존재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있을 수 있음.

c. 고가매입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거나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 고가매입의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경쟁제한성)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a. 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품귀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제품의 안정적 생산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b. 고가매입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c. 고가매입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합리적 이유 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관련 사례

사례1)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시스템통합 용역 입찰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함. 이 용역입찰의 예정가격은 97,244,000원이었음.

이 입찰에는 현대정보기술이 2,900,000원에, 대우정보시스템이 19,440,000원에, 삼성데이타시스템이 33,300,000원에 응찰하였고, 현대정보기술이 낙찰자가 되었음.

공정위 판단

- 법원은 위와 같이 저가에 입찰한 행위가 부당염매행위인지와 관련하여 낮은 대가인지 여부는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조업체의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 모두를 포함한 총원가를 기준으로 저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함.

다만, 법원은 경쟁사업자들 역시 염가에 입찰하였고, 발주처가 향후 해당 용역과 관련된 장비 및 용역을 추가 구매함에 있어서 낙찰자에게 사실상의 우선권을 부

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용역은 1회성 사업이었으므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없기에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4) 부당한 고객유인

-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됨.

나)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광고를 포함함. 제공되는 이익에는 리베이트의 제공이나 가격할인 등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제품의 과다한 제공 등 적극적 이익제공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됨.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이익제공 또는 제공제의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a.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제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함. 또한, 과대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하되, 제공되는 이익이 경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공정위 고시)」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b.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이익제공(제의)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이익제공(제의)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a. 이익제공(제의)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b. 부당한 이익제공(제의)을 함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공정위 고시)」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품(예시 : 소비자경품의 경우 거래가액의 10%, 소비자현상경품의 경우 경품가액이 경품부 상품 또는 용역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제공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개·의뢰·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구체적 예시 >

a.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b. 출판사가 자사의 서적을 교재로 소개 또는 추천하는 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c.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 채택이나 처방 증대를 위하여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

이트 제공, 과다접대 등을 하는 행위

㉱ 사업자가 다른 특정사업자로부터 수주하거나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②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됨. 또한, 기만 또는 위계는 표시나 광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적용) 이외의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

나)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행위가 대상이 됨.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에는 품질, 규격, 제조일자, 원산지, 제조방법, 유효기간 등이 포함됨.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량, 지급조건 등이 포함됨.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는 국산품 혹은 수입품인지 여부, 신용조건, 업계에서의 지위, 거래은행, 명칭 등이 포함됨.

다) 기만 또는 위계의 상대방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됨.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기만 또는 위계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

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a.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오인 또는 오인의 우려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나 광고의 경우와 달리 거래관계에 놓이게 될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실제로 당해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그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함.

b.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 등. 위계로 인하여 경쟁사업

자의 고객이 오인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 결과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비방에 불과할 뿐 부당한 고객유인에는 해당되지 않음.

다)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은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사업자가 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거래함에 있어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 성능, AS 조건 등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미끼 상품)

㉰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영업사원들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③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거래방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 포함됨. 거래방해에는 거래성립의 방해와 거래계속의 방해가 있음.

나) 거래방해의 상대방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며, 고객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포함됨.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됨.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거래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a.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의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해의 동기나 의도, 방해 이후 고객의 거래처 내지 거래량의 변화추이,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와 경쟁의 정도 등을 고려함. 거래방해 그 자체가 거래조건의 이점 등 자기의 효율성에 기초할 경우 고객유인의 효과가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거래방해는 거래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며, 실제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가 불발로 끝나거나 기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음.

b. 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a.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b.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거래강제

-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거래 강제의 경쟁 저해성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 지위의 우월성과 행위의 강제성이 충족되어야 함

①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이때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상업적 용도나 기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 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 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나)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할 수 있음.

다) 끼워팔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됨.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끼워팔기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나) 이 때, 경쟁제한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a.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이 별개의 상품(또는 용역)인지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이 밀접 불가분한 구성요소인지 여부,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짝지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지 여부,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별도로 구매하고자 하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함.

b.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등.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이때, '강제성'은 주된 상품(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며,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할 경우 주된 상품(또는 용역)의 거래거절이나 공급량감소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래처를 전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음. 이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

c.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끼워팔기에 의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봄.

㈎ 끼워팔기가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특별히 장래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 반

면, 끼워팔기가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닌 경우에는 장래의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봄.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경우 예시 >

· 주된 상품(또는 용역)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프린터와 잉크, 자동차와 타이어 등)

·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이 공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두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

㈏ 끼워팔기가 발생한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 여부로 판단함.

d. 끼워팔기로 인하여 종된 상품(또는 용역)시장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끼워팔기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a. 끼워팔기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b. 끼워팔기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② 사원판매

- 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임원이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상업사용인을 말함. 직원이란 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외의 자를 말함. 임직원에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의 형태를 묻지 않음.

나)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어떤 임직원이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예컨대, 매장 기타 영업소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자,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판매를 권유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사원 판매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 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a. 사업자가 임직원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는지 여부. 임직원에게 구입이나 판매를 강제하는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업자측의 구입·판매목표량의 설정과 할당, 목표미달시 제재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성의 유무를 판단함.

b. 임직원에 대한 구입(또는 판매)강제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잠재적 고객 포함)을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 구입(또는 판매)강제로 인하여 임직원이 실제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였을 것을 요하지는 않음.

c. 그밖에 사원 판매의 기간이나 목표량의 크기는 위법성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원 판매가 불공정한 경쟁 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사원 판매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함.

a. 사원 판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b. 부도 발생 등 사원 판매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독려를 하는 경우

㉱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③ 기타의 거래강제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이에는 명시적인 강요와 묵시적인 강요, 직접적 강요와 간접적 강요를 포함함.

나) 기타의 거래강제는 행위자와 상대방 간 거래관계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나,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의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 간 거래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됨.

다)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됨.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거래강제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a.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b. 당해 불이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 관행 해당여부는 당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불이익으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주된 거래관계에 서 공급량이나 구

입량의 축소, 대금지급의 지연, 거래의 중단 또는 미개시, 판매장려금 축소 등이 있음.

c.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 상대방이 행위자의 요구사항을 자유로이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함. 상대방이 주된 거래관계를 다른 거래처로 전환하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반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봄.

- 기타의 거래강제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기타의 거래강제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함.

a. 기타의 거래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b. 기타의 거래강제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사업자가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 관련 사례

사례1)
사실관계
- 한국토지공사는 인천마전 등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하자 상대적으로 분양이 양호한 부천상동 등 공동주택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 토지의 매입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하여 비인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함.

공정위 판단
- 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
따라서 위와 같은 연계판매행위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면서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택사업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6) 거래상 지위남용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1) 금지 이유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됨.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 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2) 거래상 지위 여부

㈎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속적인 거래관계 존재해야 함.

a.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됨. 이렇게 고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우월적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상대방은 이미 투입한 투자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 등을 수용할 수 밖

에 없는 상황이 됨.

b.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위한 전속적인 설비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또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함.

a.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관계라 하더라도 거래처 등을 변경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움.

b. 통상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

㈐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예시)

·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 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등 간 거래관계

·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상표품을 갖추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와 판매업자 간 거래관계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 간 거래관계

·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3)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함.

①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합리적 이유 없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에게 과다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량을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가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② 이익제공 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됨. 계열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됨. 이익제공 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됨.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합리적 이유 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회원권 시설운영업자가 회원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실비보다 과다한 명의개서료를 징수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대형소매점사업자가 수수료매장의 입점업자에 대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점비, POS 사용료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③ 판매목표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대상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야 함. 대체로 상품의 경우 판매량의 할당이, 용역의 경우 일정수의 가입자나 회원확보가 문제됨. 또한 판매목표 강제는 대리점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됨.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거래내용의 공정성 판단시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함.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목표 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음.

a.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 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 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수수료지급의 중

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④ 불이익제공

–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당해 행위를 할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가. 대상 행위

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함.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됨.

나)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음. 다만,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의해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계약 유효기간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계약기간중에 자기의 점포 장기임차인에게 광고선전비의 부과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한 행위

< 불이익 제공 >

㉮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조정하여 징구한 행위

㉮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불지급하는 행위

㉮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 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

⑤ 경영간섭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의결권의 행사나 채권회수를 위한 간섭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a. 대리점 등 판매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현찰판매 또는 직접 판매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 및 상담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경영효율성의 제고 또는 상품의 안전성 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시 자기와 사전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 관련 사례

사례1)

사실관계

- 배달앱의 하나인 요기요는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상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 보다 음식점으로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최저가보상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하여 판매가격 변동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함.

공정위 판단

- 공정위는 요기요에 대해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 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

위를 갖는 사업자로 판단하고,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

사례2)
사실관계
- 한국야쿠르트는 시장변동 상황, 근무일수 및 전년도 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지점별, 제품별 다음년도 판매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12월 각 지점에 통보하였음. 또한 판매목표 달성률 등이 평가항목으로되어 있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15개 대리점에 패널티를 부과하여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경고조치를 하면서 벌점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함.

공정위 판단
- 위탁대리점이 우유대리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점, 다른 거래처를 선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 한국야쿠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있음.
따라서 한국야쿠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목표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함.

사례3)
사실관계
- 쿠팡은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 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
라인 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음.

공정위 판단
- 쿠팡은 행위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 9천 7백만원을 부과함.

※ Q&A

Q1. 판매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판매점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관한 정보, 매출 상세정보, 생산/판매/재고 현황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A. 판매점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확보하고 동 정보들에 근거하여 판매점의 경영에

간섭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모니터링 자체만 가지고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단, 현실적으로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간섭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Q2. 판매점이 기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분기 판매계획을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 초과량에 대하여 가격을 할인해 주면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는가?

A. 계획량을 초과하지 못했을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량을 초과했을 경우 일정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판매계획량은 판매점이 전 분기 실적 등을 감안하여 구매하겠다고 요청하는 양을 기준으로 상호 결정한 것이고, 또한 판매점에게 정상적인 마진을 보상해준 상태에서 순수하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라면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Q3. 구입강제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품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것인가?

A.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입증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거래상대방의 주문이 없는데도 회사의 재고량 해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공급하면서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의 영업과 무관한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

3. 신제품을 거래상대방의 의사를 불문하고 대량 공급하고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4. 거래상대방이 자재의 구입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재를 별도의 운송비까지 지급하면서 구입한 경우

7) 구속조건부거래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 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에 위반

① 배타조건부 거래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a.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함.

b.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 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함. 따라서 판매업자의 소요물량 전부를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독점공급계약과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을 전부 자기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독점판매계약도 배타조건부 거래의 내용에 포함됨. 또한 경쟁사업자와의 기존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규거래 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됨.

c. 배타조건의 형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거래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됨. 위반시 거래중단이나 공급량 감소, 채권회수, 판매장려금 지급중지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당해 배타조건이 사실상 구속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음.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배타조건부거래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타조건부거래가 물품 구입처 또는 유통경로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a.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신규진입자 등 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시장배제효과가 낮게 됨.

b.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c.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행위자가 선도기업이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음.

d. 배타조건부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거래 상대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음.

e. 배타조건부거래 실시기간. 실시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나 장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됨.

f. 배타조건부거래의 의도 및 목적. 배타조건부거래가 사업초기에 시장에의 신규진입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낮을 수 있음.

g. 배타조건부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행위자의 시장지위 강화효과가 커질 수 있음.

-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a.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 조건부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b.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c.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특정 유통업자가 판매촉진 노력을 투입하여 창출한 수요에 대하여 다른 유통업자가 그에 편승하여 별도의 판매촉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판로를 확보하는 행위) 방지, 판매 및 조달 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경쟁사업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를 하면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중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경쟁사업자가 타 업무제휴 상대방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구입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입선과 거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생산(또는 판매)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거래처인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해 경쟁사업자 제품의 취급증가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여 줄 것과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시에는 자신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병행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총판에게 병행수입업자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도매 및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

㉰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석유제품 전량구매를 강제하는 등 석유판매업자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판매지역 구속에는 그 구속의 정도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판매책임지역을 설정할 뿐 그 지역외 판매를 허용하는 책임지역제(또는 판매거점제), 판매지역을 한정하지만 복수판매자를 허용하는 개방 지역제한제(Open territory),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할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제재함으로써 이를 강제하는 엄격한 지역제한제(Closed territory)로 구분할 수 있음.

나)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도 대상이 됨. 거래상대방의 영업대상 또는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임. 예를 들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리점(또는 판매업자)을 가정용 대리점과 업소용 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서로 상대의 영역을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거래할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지정하는 행위 등이 해당됨.

다) 상기의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함.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함.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브랜드내 경쟁제한 효과와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한 후 판단함.

-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a. 상기 요인 이외에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효율성 증대 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b.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지정 또는 할당하고, 그 구역 밖에서의 판촉 내지 판매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선인 소매업자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에게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 관련 사례

사례1)

사실관계

-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서 계약서상에 대리점이 관할 영업규역 외에서 영업을 할 때, 피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을 이탈하여 거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정위 판단

-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 대리점의 거래지역에 대하여 행정규역 기준, 일정한 판매지역을 할당해 주고 해당 판매지역 내의 소매점등과 거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즉, 대리점이 크라운제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해당 판매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 사전에 크라운제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판매지역 이외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피심인과 대리점 간에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라 피심인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 법 위반에 해당함.

사례2)

사실관계

- ㈜국순당은 도매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목표를 설정한 후 도매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설정함.

공정위 판단

- 1.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도매점은 ㈜국순당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국순당이 영업에 관하여 지위, 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순당이 명확한 이유의 고지 없이 일부 대리점에 대한 주류 공급을 일방적으로 축소 내지 중단한 것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대리점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에 있는 ㈜국순당이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품공급의 중단, 계약해지 등을 통해 제재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도매점들이 ㈜국순당의 부당한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3. 판매지역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23조 제2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려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거래지역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고,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하며, ㈜국순당은 도매점들이 계약서상 합의된 거래지역 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도매점의 거래지역을 제한하였기에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4.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을함과 동시에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의결 제2013-098호)

사례3)

사실관계

- ㈜정식품은 부산지역 전 대리점장들에 대하여 오프라인 대리점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판매를 지양할 것을 교육 전달함

공정위 판단

-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공정위는 거래의 상대방 선택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이 인터넷쇼핑몰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식품의 서면 및 구두 공지, 확인서 작성 강요 등의 행위는 대리점의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판매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또한 이는 사실상 자신이 공급하는 두유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 나아가 두유시장에서 약 4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식품이 소속 대리점들로 하여금 인터넷쇼핑몰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브랜드 내에서 가격인하 유인을 축소시킬 우려가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정식품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림.(약식 제2009-206호)

※ Q&A

Q1. 제조업체가 대리점과 계약시 계약서상에 판매 및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 위반이 되는지?

A.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됨. 단, 지역의 판매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특정지역에 대한 판매책임제, 판매거점제 등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음.

Q2. 대리점에게 판매지역을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되는가?

A. 지역제한의 경우 구속성의 정도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즉, 지역구속성이 약한 단순한 지역책임제나 판매거점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됨(제조업자가 판매점에 대해 일정한 지역을 주된 판매지역으로 설정할 뿐 지역외의판매도 허용되는 경우). 그러나 지역구속성이 강한 지역제한은 문제가 됨. 예컨대 해당제품의 시장이 독과점 상태에 있고, 지역제한이 이를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제한을 어겼을 때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Q3. 제조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상호를 부착한 대리점에 대하여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A. 자사 상호를 부착한 대리점에 대하여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것은 부당

한 거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8) 사업활동 방해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①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가. 대상행위

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또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영업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함.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기술의 부당이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a. 기술이용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기술이용의 목적 및 의도, 당해 기술의 특수성, 특허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통상적인 업계 관행 등이 고려됨.

b.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기술의 부당이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②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다른사업자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나. 위법성 찬단기준

가)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a. 인력 유인·채용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인력유인 채용의 목적 및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력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됨.

b.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핵심인력을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③ 거래처 이전 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거래상대방의 거래처이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이 됨.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거래처 이전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a. 거래처 이전방해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처 이전방해의 목적 및 의도, 거래처 이전방해에 사용된 수단,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이전될 거래처가 사업영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됨.

b.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거래처 이전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④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가. 대상 행위

가)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됨. 방해의 수단을 묻지 않으며, 자기의 능률이나 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함.

나. 위법성 판단기준

가) 사업활동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함.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a.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활동방해의 수단, 당해 수단을 사용한 목적 및 의도,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됨.

b.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사업활동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경쟁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던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의 해지 및 판매량감소 등을 야기하는 행위

㉰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Q&A

Q1. 경쟁사에서 차세대 사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실력이 매우 뛰어난 직원 약간명을 거액의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여 당사로 옮기게 한 경우 사업활동 방해가 될 수 있는가?

A. 인력의 유인·채용이 사업활동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동 채용으로 인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어야 하므로 개별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일반직원을 유인·채용한 경우에는 사업활동 방해까지 되기는 어려움.

Q2. 당사가 경쟁사 특정 부서의 중견 직원 수명을 순차적으로 스카우트 하는 경우 불공정행위인가?

A. 당해 부서에서 스카우트한 직원들이 차지하는 역할, 이로 인해 경쟁사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한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5. 부당한 지원행위

- 개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① 부당지원행위의 정의

가. 법률 및 판례에 따른 정의

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부당하게』 의미 (대법원 2004.9.24. 2001두6364 판결)

'부당하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목적(제1조)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

② 부당성 판단기준

가. 부당성 판단의 기본원칙

가)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 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또는 강화할 경우

b.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c.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d. 지원객체가 속하는 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e.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 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 대법원 판결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 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장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부당한 자금지원

① 정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예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고)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나)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다)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객체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하는 경우

② 업무상 유의사항

○ Do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 기간의 특정되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 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함.

▪ 지원금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함.

▪ 대여금, 용역대금을 변제기 내에 회수하고, 변제기를 도과하여 회수하는 경우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함.

○ Don't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 적용금리와 개별 적용금리 또는 일반 정상금리와의 차이가 7%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적용금리와 개별 정상금리의 차이가 10% 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 관련 사례

사례1)

사실관계

-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21억원을 차입하는데에 원고 웅진홀딩스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예금 600억권과 주식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인 5.50~5.87%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 자금지원이 있었음.

공정위 판단

- 법원은 피고(공정위)가 그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거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은행이 웅진폴리실리콘 또는 웅진폴리실리콘과 신용등급이 비슷한 회사와 무담보대출 거래를 한 실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실제 적용된 금리와 일반정상금리인 6.83~7.07%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4255)

3)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① 정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

재산권 등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예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고)

가)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나)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다) 계열금융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행위

② 업무상 유의사항

○ Do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불가피한 범위내에서의 지원은 가능함.

▪ 임대료 산정 시 당해 부동산의 종류,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고려하여야 함.

▪ 계열사 간 부동산을 임대차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차료를 제공하거나 임대료를 제공받아야 함.

▪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의 조건은 비특수관계인의 거래조건과 비교함.

▪ 상품·용역거래시 시장에서 형성된 정상가격을 산정 기록 관리하여야 함.

▪ 계열사 지원시 지원주체에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 계열사와 거래할 때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만약,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의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함(수의계약의 필요성).

▪ 시장가격(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되 시장가격(정상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적정가격에 따라야 함.

- 정상가격이란 당사가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의 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 산정시 내부와 외부거래시의 이익률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함.

- 상품 용역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점(장점)이 계열사에 발생하는지 확인함.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면 부당내부거래로 인정될 수

있음.

- 본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도 계열사의 사업활동에 충분한 거래규모가 확보 되는 등 계열사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본 거래물량만으로 계열사에 유동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 계열사에 거래조건의 특혜가 제공되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검토하여야함.

▪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함.

▪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되며, 현실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함.

▪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을 의미하므로,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함.

○ Don't

▪ 정상적인 임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음.

▪ 계열사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함.

▪ 인쇄비/물품구매 위탁수수료/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를 과다 지급하여서는 안됨.

▪ 계열사에게 무료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됨.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률보다 높은 낙찰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됨.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됨. 계열사에게 업무의 대부분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주어서는 아니됨.

▪ 계열사 간의 거래물량의 확보만으로 사업의 위험성이 제거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

▪ 계열사 간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절감효과가 계열사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어서는 아니됨.

※ 관련 사례

사례1)

사실관계

- 현대자동차가 2001.2.23 자신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인 씨앤씨캐피탈 주식회사의 발행 총 주식 121.571.567주의 6.82%에 해당하는 830만 주를 경영권을 취득하는 대가(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로 전일 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4,800원보다 6.25% 높은 1주당 5,100원 총 매수대금42,330,000,000원에 장외에서 매입하고, 여기에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원고 현대제철 발행 총 주식수의 4.70%에 해당하는 5,709,517주와 합쳐 11.52%(14,009,517주)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제1대 주주가 된 사실, 원고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지 11일 후(거래일 기준 6일 후)인 2001.3.6 자신이 보유하던 원고 현대제철의 주식 전부인 14,009,5117주를 시간외 종가매매를 통하여 1주당 4,830원(총 매도대금 67,666,000,000)에 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이 있음.

공정위 판단

- 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씨앤씨캐피탈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경영권프리미엄을 주고 장외매입한 후 원고 기아자동차에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시가로 장내 매각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원고 현대자동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원고 기아자동차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지원행위이고, 원고 기아자동차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행위는 지원객체인 원고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자금력을 제고시키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거나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시킬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5963)

사례2)

사실관계

- 현대상선은 징수 수수료의 입금에 대한 상호 정산이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대금의 수령을 지연하여 오다가, 1998. 1. 위 용역계약에 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현대상선이 현대물류로부터 매출액 전액을 수령하는 대신 현대물류에게 추가약정서에서 특정된 운영인건비 등을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운영권 사용대가의 지급방식을 변경함과 아울러 추가약정의 내용을 최초 계약일에 소급 적용하도록 합의하여, 현대물류의 수수료 지급 지체 책임을 사실상 면책시킴.

공정위 판단

- 대법원은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지연수령행위 전부가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사례3)

사실관계

- 원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은 원고 글로비스가 설립(2001년 2월)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1년 3월부터 원고 글로비스가 통합물류체계를 완성한 2004년 6월까지 원고 글로비스에세 자사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 탁송, 철강 운송 등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 양수도 또는 수의계약 방식을 통하여 대부분 몰아줌.

공정위 판단

-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이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물류업무를 집중시켜준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문제된 거래물량의 비중이 당시 물류시장 1위 사업자의 매출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점, 글로비스 전체 매출액의 35.8~41.7%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정하고, 글로비스가 비계열사와의 거래보다 훨씬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시현한 점, 운송단가를 시장가격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한 점, 대부분 수의계약 후 단기간 내 운임단가를 대폭 인상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본 건 지원행위로 글로비스가 산업 평균에 비하여 높은 자기자본 증가율, 매출증가율, 총자본영업이율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현대글로비스가 설립 후 2년만에 2위 사업자로, 4년만에 1위 사업자로 급부상한 점에 비추어 본건 '물량몰아주기'는 글로비스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하여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여 부당성을 인정하였음. (서울고법 2009.8.19. 선고 2007누30903판결)

사례4)

사실관계

-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인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공정위 판단

-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웰스토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웰스토리는 내부거래를 통해 취득한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함. 또한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발판으로 단체 급식 경쟁입찰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독립 급식업체의 생존을 위협했고, 지원행위에 의해 웰스토리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 강화됨으로써 웰스토리의 경쟁 여건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제고되었음.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및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함.

4) 부당한 인력지원

① 정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예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고)

가)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나)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경우

다)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업무상 유의사항

○ Do

▪ 업무지원을 위해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급여를 제공하여야 함.

○ Don't

▪ 계열사의 인건비를 무상으로 부당하여서는 아니됨.

※ 관련 사례

사례1)

사실관계

-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라ㅇㅇ 등 자신의 직원 11명에게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의 업무를 담당하게하고 이들의 급여를 에코그린캠퍼스 대신 지급하였음. 피심인 삼양식품은 자신의 소속 임원들로 하여금 에코그린캠퍼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하였음. 삼양식품 소속인 이ㅇㅇ는 2007.5.31.부터 2011.3.28.까지, 그리고 박ㅇㅇ은 2011.3.29.부터 2015.3.31.까지 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음.

공정위 판단

- 삼양식품 주식회사는 인력을 파견하여 계열회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를 지원하였고, 피심인 에코그린캠퍼스 주식회사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파견받고 차량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피심인 삼양식품 주식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음. 이에 공정위는 두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02백만원)을 부과하였음.

5)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① 정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가. 예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고)

가)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나)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② 업무상 유의사항

○ Do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함.(계열사의 구체적 역할)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전문적 역할, 당사의 거래비용 절감, 당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 등 구체적 역할 입증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은 후 불리, 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당사의 지급금액은 그대로인데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비계열사에는 그만큼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중간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과 거래관계의 변동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함.

○ Don't

▪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의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한 거래를 하지 않음.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거래단계에 추가시켜 수익을 귀속시키게 하지 않음.

※ 관련 사례

사례1)

사실관계

- 2005년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엘에스글로벌인 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음.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해옴.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장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함.

공정위 판단

- 공정위는 (구)엘에스전선[현(現) ㈜엘에스]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함.

사례2)

사실관계

- 하이트진로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남. 당초 삼광글라스(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고, 나중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알루미늄 코일(공캔의 원재료)과 글라스락캡(유리밀폐용기 뚜껑)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함. 특히, 서영이앤티가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와 이면 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 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까지 함.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중소기업에 각종 피해를 끼치며 총수1세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함.

공정위 판단

-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장기간(2008년 4월 ~2017년 9월)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함.

사례3)

사실관계

- 롯데피에스넷은 기존의 직거래방식과는 달리, 2009. 9월부터 2012. 7월 현재까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구)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하였음.

공정위 판단

- 피심인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면서 직접 구매할 때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따라서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649백만원)을 부과하였음.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지원행위를 하여 해당 계열회사가 시장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 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사업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게 되는 경우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계열회사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 Q&A

Q1. 계열회사 간의 제반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와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문제됨. 따라서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 회사와 차별하여 계열회사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아울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자금, 자산, 인력 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계 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Q2. 계열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소규모 인원이라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가?

A. 1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원을 파견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다수 계열회사들이 동시에 특정 계열회사에 인원을 파견한다면 인력을 통한 부당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당지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비용 정산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음.

Q3.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거래시 특별한 역할이 없는 해당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단계에 포함시켜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A.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중 ‘통행세 지원행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Ⅲ. 상생협력법(납품대금 연동제)

★ 반드시 알고가야 할 사항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하도급법상 대기업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포스코그룹 계열회사 간 거래는 하도급법 적용 X

1) 납품대금연동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 (상생협력법에 규정, 2023.10.04 시행 / 시행일 이후 체결,갱신하 수탁 및 위탁 거래부터 적용)

① 납품대금 연동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② 주요 원재료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차지하는 원재료

가. 천연재료
- 금, 철,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목 등

나. 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 비닐 등

다.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합성수지등

라. 수탁기업이 위탁 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중간재
-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전기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④ 연동 대상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의미함. 다만, 해당 수탁·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가 있다면 주요 원재료를 하나 이상 포

함하여야 함.

⑤ 위탁기업

위탁기업 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

- 외국법인도 무방하고,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음.

-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받은 위탁사업자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정한 경우 대표자가 아닌 위탁사업자 역시 위탁기업에 포함됨.

⑥ 수탁기업

수탁기업 이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 받아 전문적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함.

2)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 대상 : 수탁·위탁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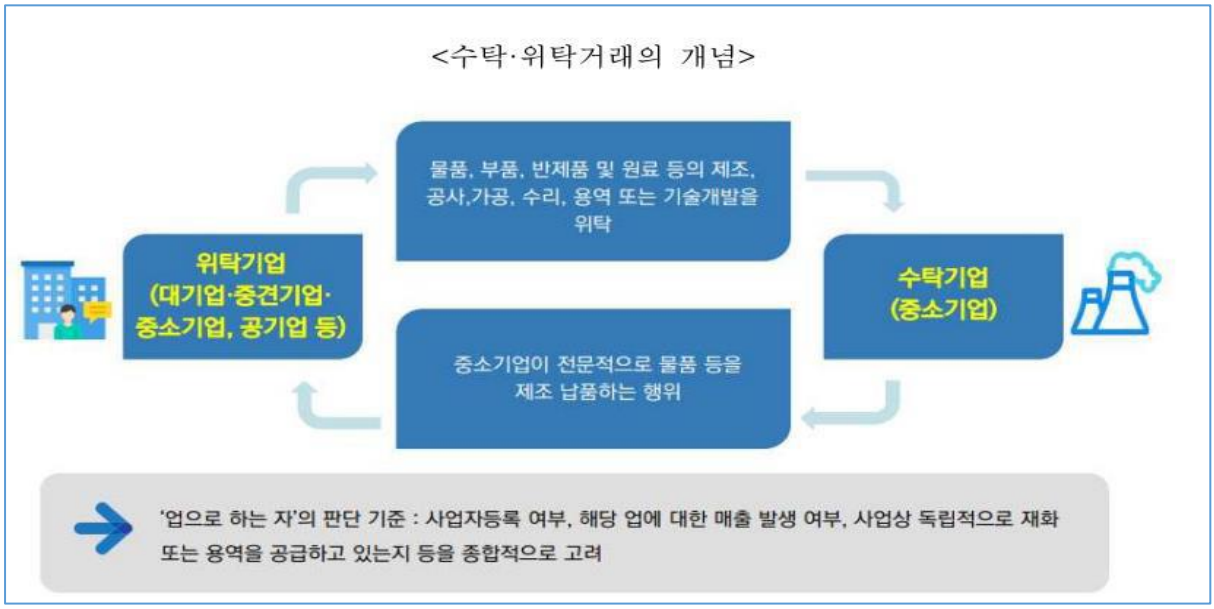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의 범위는 아래 예시를 포함한다.

구분	범위
제조업	제조업 중 가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공사업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가공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금속 열처리, 도급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등
수리업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판매업	도매업 및 소매업
용역업	전기, 가스, 수도,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3) 납품대금 연동제 절차

①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계약을 체결할 때 연동 조건을 상호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 어떤 원재료를 대상으로 할지, 원재료의 가격 기준지표는 무엇으로 할지, 조정요건, 조정주기, 연동 산식은 어떻게 할지 등을 정하여 약정서에 기재

-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는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

- 수탁, 위탁거래 기본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의 특별약정서에 작성하는 것도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하는 표준약정서 사용을 권장

② 조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해당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ex) 조정요건이 5% 이상 또는 -5% 이하로 설정된 경우, 가격 기준지표가 10% 상승하였으면 조정요건을 충족하나, 3% 상승하였으면 미충족

③ 납품대금 조정

- 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

ex) 연동 산식이 직전 납품단가 x (1 + 동 가격 기준지표 변동률)로 설정되었고, 직전 납품단가가 10,000원인데, 동 가격 기준지표가 10% 상승하였으면 11,000원 (10,000 x (1+0.1))으로 조정

④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전에 수탁, 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시점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납품대금 연동제 제외 대상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 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납품대금 연동제 Q&A

Q1. 납품대금 연동제란 무엇인가요?

A.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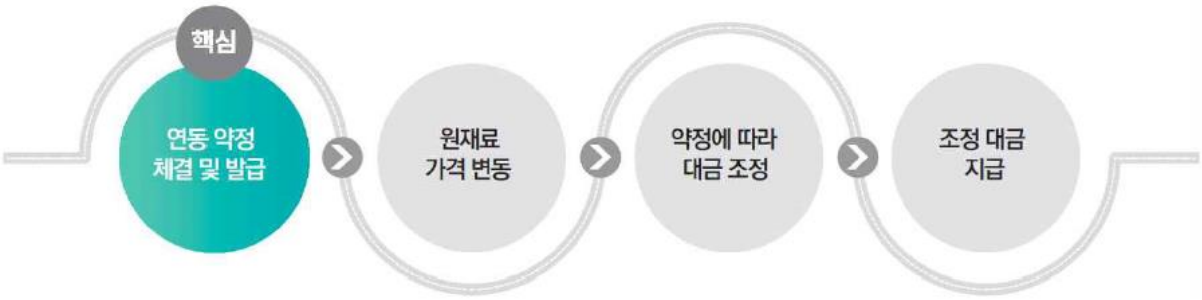

Q2.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무엇인가요?

A.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를 넘는 원재료를 말하고, '수탁·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A. 위탁기업이 소기업,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미연동 합의의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연동 합의의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Q3.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A.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 원재료라 함은 가공이나 용역이 투여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기는 하나 물리적·화학적으로 최종 물품등의 구성품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 물품으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물품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고, 제조를 위해 수탁기업이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성품은 연동제의 대상인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 ex) 페인트 도장 공사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업이 구매하는 기성품인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요 원재료의 범위

① 천연재료

〈예〉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

〈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예〉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Q4. 주요 원재료란 무엇인가요?

A.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납품대금이 10억원이고,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구입비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5억원이라면, 철은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50%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Q5. 수탁·위탁거래란 무엇인가요?

A. 수탁·위탁거래는 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Q6. 위탁이란 무엇인가요?

A. 위탁이란 통상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물의 처리를 남에게 의뢰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반대로 수탁이란, 남에게 의뢰를 받는 행위를 말하겠죠?

※ 위탁기업 - 의뢰를 하는 기업 / 수탁기업 - 의뢰를 받는 기업

Q7.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이 가능한가요?

A.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연동 사항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이 아닌 변동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납품대금이 연동될 수 있습니다.

Q8. 대기업도 수탁기업이 될 수 있나요?

A.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므로 대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9.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탁기업의 업종과 위탁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나요?

A.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의 업종과 위탁내용이 동일한 업종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위탁기업의 업에 따른 위탁일 필요도 없습니다.

※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가 아닌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수탁기업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므로 만일 주요 원재료가 있고, 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Q10. 위탁기업이 자체 사용을 위해 물품등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자체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위탁기업이 구체적인 사양을 정하여 물품등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하였다면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11. 국내업체에게 기성품을 구매하게 한 후, 자사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A. 기성품에 자사의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한 것은 자사 로고가 부착되도록 사양을 정하여 물품의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Q12. 제품 고정용 테이프, 접착제 등 부자재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사양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경우가 모두 단순 구매에 해당하나요?

A. 부자재 구입 거래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단순히 기성품을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 구매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양을 지정하여 부자재를 제조하는 기업에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았다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13. 한국산업표준(KS-㉮) 규격제품을 구매하는 거래가 단순 구매인가요?

A. 한국산업표준(KS) 규격제품은 대체물로서 단순 구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14.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범위는?

A.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공급원가 중 재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해당하며, 기타 공급원가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Q15. 인건비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나요?

A.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연동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Q16.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나요?

A.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경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전력비, 가스비, 운반비, 유류비, 외주가공비 등은 일반적으로 연동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Q17.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경우, 대상 장비가 원재료에 해당하나요?

A.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경우는 용역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설치된 장비 자체는 변동없이 유지·보수만 이루어지는 경우 설치된 장비 자체를 용역수행에 수행되는 원재료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부품 등이 사용되고 이러한 부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경우, 연동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8. 가설 자재(H빔, 비계 및 동바리 등)도 연동의 대상이 되나요?

A. 비계나 거푸집 등 가설 자재는 제조에 사용된다고는 할 수 있으나, 최종재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어서 원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연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Q19.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요?

A.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탁 기업은 약정의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조정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20.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약정서의 내용은 양사의 합의가 가장 우선시 되는 요건인가요?

A. 주요 원재료는 상생협력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합의로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Q21.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거래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A. 거래에 관한 계약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거나 별도의 연동 특별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Q22. 대기업과 1차협력사, 1·2차협력사, 2·3차 협력사까지도 연동제 적용이 되나요?

A.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2차 협력사가 3차 협력사에게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기업~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1·2차협력사, 2·3차 협력사도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각각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각 단계의 수탁·위탁거래계약에서 1, 2차 협력사가 소기업인 경우 등,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생협력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금액인 경우

Q23. 위탁기업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의 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할 의무가 있나요?

A. 1차-2차 협력사 간의 연동 약정 체결에 대하여 위탁기업이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Q24. 수주사업에 대한 수탁·위탁거래계약도 연동제의 대상인가요?

A. 발주자-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거래구조를 가진 수주사업의 경우에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고 주요 원재료가 존재한다면 연동제 적용대상입니다.

※ 참고로, 위탁기업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서로 무관합니다.

Q25. 연동 약정서 발급 시 수탁·위탁기업의 서명이 필요한가요?

A.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도 상생협력법상 약정서이므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Q26. 계약기관과 연동 약정 기간을 다르게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연동 약정은 계약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전체 계약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미연동 합의가 필요합니다.

Q27. 인건비만 투입되는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나요?

A. 인건비만 투입되는 수탁·위탁거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로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연동에 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Q28.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나요?

A.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 하더라도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Q29. 1회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나요?

A.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성 거래라도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Q30.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하나요?

A.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연동 약정과 무관한 영업비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한도를 넘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31. 수탁기업이 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수탁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면, 미연동 합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Q32. 수탁기업으로부터 받은 원가 정보가 기술자료에 해당할 경우 비밀 유지계약의 체결 의무도 병행해서 발생하나요?

A.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가 정보가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생협력법 제21조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 2. 비밀유지의 의무의 내용
>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Q33. 연동과 관련한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A.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①물품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조정요건, ④기준지표, ⑤산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Q34.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상호 합의하에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나 연동 산식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수탁·위탁기업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 다만, 연동 약정도 대금을 정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특정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불리하게 기준지표나 산식을 변경하는 경우 부당 대금 감액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35. 주요 원재료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상생협력법 제2조 제12호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품대금이란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에 이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1건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을 납품한 대가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 1건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총금액 중 특정 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이라면 주요 원재료로서 연동의 대상이 됩니다.

Q36.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원재료의 총금액과 단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 원재료의 비용이란, 약정 체결 시점에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개별 원재료의 단가가 아닌, 물품 한 단위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개별 원재료의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Q37. 주요 원재료 여부는 재료비 총액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또는 특정 원재료의 비용을 대상으로 판단하나요?

A. 주요 원재료 여부는 재료비 총액이 아닌, 특정 원재료의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8. 조정주기마다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A.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계약서 유효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Q39.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납품대금 연동 약정은 1건의 수탁·위탁거래 계약마다 체결해야 합니다.

※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라면 개별 공사계약마다,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합니다.

Q40.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연동제 대상인가요?

A.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 복수의 주요 원재료 모두가 각각 연동의 대상입니다.

Q41. 3종류 원재료가 각각의 비용이 납품대금의 9%를 차지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나요?

A.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재료 각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3종류 원재료 각각의 비중이 9%라면, 3종류 원재료 모두 주요 원재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 위·수탁기업이 서로 합의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는 있

습니다.

Q42. 재료비 항목이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나눠지는데, 어떠한 항목을 주요 원재료로 판단해야 하나요?

A. 직접재료비에 포함된 원재료가 수탁·위탁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라면 주요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직접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간접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포장재료비 등)

Q43. 주요 원재료의 판단을 견적 단계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제품을 납품받은 후 실사를 해서 정할 수 있는지?

A.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없이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 주요 원재료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약정 이행의 착수 전에 상호 간 협의하여 정하고 약정서에 적어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Q44. 수탁기업이 복수의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동일한 원재료를 조달할 경우 주요 원재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복수의 판매처로부터 각각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원재료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하며, 다른 원재료일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계산합니다.

Q45.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ex. 런던금속거래소, 한국은행, e-나라지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등이 있습니다).

Q46.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정하기 위한 지표를 고시하는 기관이 같아야 하나요?

A.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간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원재료 가

격의 기준지표를 고시하는 기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Q47. 조정요건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조정요건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Ex) 조정요건을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하는 경우로 정한 경우,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3.1%일 때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2.9%인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 재 사 항(예시)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조 정 요 건	+3%이상 또는 -3%이하	+5%이상 또는 -5%이하	+10%이상 또는 -10%이하

Q48. 원재료 기준가격이 조정요건 이상으로 변동 시 그 변동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나요?

A. 개별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변동분의 반영 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49. 조정요건을 상승 시와 하락 시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A. 조정요건은 위·수탁기업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상승 시와 하락 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상승과 하락의 요건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 등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50. 경쟁입찰 방식도 연동제가 적용되나요?

A. 최저가 입찰제로 수탁기업을 선정하여 가격을 확정하는 경쟁입찰 방식도 위탁·수탁거래상 주요 원재료가 있고, 연동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Q51. 위탁기업이 사전에 입찰공고에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공고할 경우, 성실협의 의무 이행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입찰공고에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상생협력법상 성실협의 의무 위반이나 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52. 입찰과정에서 연동약정 협의를 위해 원가 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았으나, 연동 약정을 결국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A. 연동약정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한 목적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최소한의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Q53.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탁·위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위·수탁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54. 연동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미연동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나요?

A. 예외사유중 위탁기업이 소기업,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의 경우에는 연동약정 체결 대상이 아니므로 미연동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탁·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미연동계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고 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Q55.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A.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 하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에 따라 10인~5인 미만인 경우 해당.

Q56. 납품대금이란 무엇인가요?

A.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등 및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납품대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하되, 부가가시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57.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위탁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면제 되나요?

A. 개별 거래의 사정에 맞게 연동을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미연동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Q58.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약정서에 취지와 사유는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나요?

A. 우선, 작성 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미연동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사유를 적으면 되는데, 그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Q59. 공사계약 시 원재료 물량에 대한 비용을 선지급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원재료 가격을 선지급한 것으로는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 사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60. 납품대금 연동제 미체결 합의의 대표적인 사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미연동 합의 사유의 사례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위탁기업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음
-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납품대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다른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음(복수의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자회사 관계임
-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충분히 조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개별 거래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합의 시 성실한 협의를 거쳐 기재한 사유에 위타기업과 수탁기업의 진정한 의사가 잘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Q61.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약정서 미발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미발급하는 경우 :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탈법행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이 부과됩니다.

Q6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전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지 문의하여 수탁기업이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동제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A. 주요 원재료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 주요 원재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가 없다고 하였음을 이유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연동의무 이행을 위해 수탁기업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지사항 > 납품대금 연동제 자주묻는 질문(FAQ)를 활용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자주 묻는 질문 (smes.go.kr)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공정거래법(부당한공동행위)

NO.	위반유형	점검내용	점검확인
1	협회 등 참석	[동종업계 협회, 사업자단체 등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모임 중 가격, 생산량,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입찰가격 등 결정 관련 주제가 언급 된 적이 있는가? - 해당 주제 언급 시 관련 협의 또는 합의가 진행되었는가? - 협의,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이에 찬성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가?	
2	경쟁사 직접 접촉	[경쟁사와 정기/비정기적인 교류나 모임을 하고 있는 경우] - 모임 중 가격, 생산량, 거래지역/상대방, 입찰가격 등 결정 관련 주제로 협의/합의가 진행된 적이 있는가?	
		- 경쟁사와 만날 수 밖에 없는 공식적인 회의 시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가격정보, 조건 등을 교환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구체적인 합의(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모두 포함) 내용을 당사의 가격 등 결정에 반영한 적이 있는가?	
		- 원재료 공급업체(또는 협력업체)의 가격인상 요청에 대해 경쟁사와 합의하여 가격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경쟁사와 합의하여 가격 인상폭을 정하거나,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는가?	

3	경쟁사 간접 접촉	- 직접적인 교류 외의 방법(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경쟁사와 접촉한 적이 있는가? - 간접 접촉 시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 - 간접 접촉 시 주고받은 정보가 당사 가격결정에 반영된 적이 있는가?	
NO.	**위반유형**	**점검내용**	**점검확인**
4	자료 점검	- 당사 내부 문건(보고서, 회의록, 배포자료 등) 작성시 경쟁사와의 "협력", "공동대응", "정보공유", "교류"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공문, 이메일, 팩스 등 기타 방법으로 경쟁사와 주고받은 문건에 "가격 등" 결정을 위한 요청사항이나 협의내용이 포함된 적이 있는가? -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가격협의, 공동대응, 정보공유, 교류 등)이 적힌 이메일, 수첩, 달력, 메모 등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가?	
5	입찰가격 담합	- 사업간에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업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관련 정보의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높은 수주금액 또는 수준을 정한 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수주예정자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입찰참가자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응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타 업체에게 낙찰 협조의 대가로 차기 사업발주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주겠다고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뒤 이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특별회비·부과금 등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NO.	**위반유형**	**점검내용**	**점검확인**
7	수의계약 유도	-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당해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	수주물량 결정	-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 배분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 등의 결정을 하면서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방해 또는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대하여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경영간섭	-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 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률을 기부금이나 특별회비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부당한지원)

NO.	위반유형	점검내용	점검확인
1	수의계약 가능여부	- 해당 거래가 당사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인 계열회사와의 거래인지?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 급등락 등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입찰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인지? ①특허, 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의 제조자와의 계약 ②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③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 될 수 없는 경우인지?	
		- 계약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 기업집단의 이미지 통일 및 표준화 계획 또는 경영 정책상 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 입찰공고 후 입찰자가 1인이거나 참자자가 없어 재공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재차 참여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인지?	
		-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거나,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	
2	사업기회 제공	- 상대방 계열사에 영업권, 영업상 중요 자산 등을 양도하는 거래인지?	
		- 제공 대상 사업회사가 당사가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인지?	
		- 당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지?	
		-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NO.	위반유형	점검내용	점검확인
3	부당자금 지원	- 특수관계인(계열사 등)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계열회사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대여금 및 대여금 이자 미회수, 지연회수 행위 등)	
4	부당자산 지원	-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 매입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행위 등)	
5	부당인력 지원	-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인력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등)	
6	거래단계 추가	-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계열회사 등을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지 않는가?	
7	부당 거래거절	-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 또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는가?	
8	가격차별	- 거래가격의 격차설정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거래지역/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가?	
9	거래조건 차별	- 객관적 기준 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해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가?	
10	계열사를 위한 차별취급	- 계열사에 대해 수량, 가격, 품질 등이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유리한 취급을 하는가?	
11	부당염매	-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총판매원가 이하로 제품을 공급하는가?	

NO.	위반유형	점검내용	점검확인
12	부당 고가매입	-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상품/용역 등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대가로 구입하는가?	
13	부당 고객유인	-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판매점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이거나 객관적 지급 기준 없는 경품 또는 리베이트 등)을 제공 또는 제시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가?	
14	거래 강제	-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공급사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가? (계열사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회사에 한하여 거래하는 행위, 회사 납품업체에게 계열회사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15	구입 강제	- 고객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가? (거래처에 대해 구입하지 않으면 향후 계속적인 거래에 영향을 받을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려 구입토록 하는 경우 등)	
16	이익제공 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가?	
17	불이익 제공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가?	
18	경영 간섭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의 선임이나 해임시 자기의 지시,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 하는가?	
19	사업활동 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가?	

하도급법

NO.	의무/ 금지사항	점검내용	점검확인
1	서면발급 및 보존 의무	-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작업지시서 등을 작업 시작 전에 교부한다. ① 작업내용 ② 완료 시기 및 장소 ③ 검사 방법 및 시기 ④ 대금 지급 방법 및 기일 ⑤ 원재료 제공시 수량·제공일·대가지급 방법 및 기일 ⑥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 수급사업자로부터 서면 발급 요구를 서면 통보 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회신한다(기간 내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통보 내용 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부당한 특약의 금지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 부당유형 ①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하는 약정 - 부당유형 ② : 원사업자 부담의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부당유형 ③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 - 부당유형 ④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물품의 구매나 역무의 공급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NO.	**의무/ 금지사항**	**점검내용**	**점검확인**
5	선급금 지급 의무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	
6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검사 기준, 방법, 시기	- 기성검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 통보한다(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것으로 봄)	
8	부당반품 금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목적물 반품을 하지 않는다.	
9	감액금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감액을 하지 않는다.	
10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 물품, 용역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11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 요구시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서를 사전에 발급한다. ① 요구목적 ② 권리귀속 관계 ③ 대가 및 지급방법 ④ 명칭 및 범위 ⑤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⑥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성 - 기술자료 제공시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법정기재사항이 기재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① 명칭 및 범위 ② 사용기간 ③ 기술자료 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 비밀유지의무 ⑤ 목적 외 사용금지 ⑥ 위반에 따른 배상 ⑦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12	하도급대금의 지급	-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 수행 마친 날, 납품이 잦아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NO.	**의무/ 금지사항**	**점검내용**	**점검확인**
1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14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지 않는다.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15	보복조치의 금지	- 원사업자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6	탈법행위 금지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상생협력법

NO.	항목	점검내용	점검확인
1	상생협력법 (납품대금 연동제)	- 상생협력법 중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까?	
		- 위탁 및 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연동 조건을 상호 협의했습니까?	
		- 상생협력법 중 납품대금 연동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체결시에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비용이 10% 이상입니까?	
		- 어떤 원재료를 대상으로할지, 원재료의 가격 기준지표는 무엇으로 할지, 조정요건, 조정주기, 연동산식으로 어떻게 할지 등을 정하여 약정서에 기재했습니까?	
		-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는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에 각자 1부씩 보관했습니까?	
		- 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했습니까?	
		-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했습니까?	
		- 납품대금 연동제 제외 대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까?	
		- 2023년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사항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까?	

포스코GY솔루션 공정거래 상담 및 신고 채널 안내

윤리 및 인권, 공정거래 상담 및 신고 채널

· 온라인 e_6262@poscogysolution.com

· 전화 061) 797-9880~9881 (비윤리, 인권침해, 부패, 성희롱, 괴롭힘, 공정거래 상담)

· 방문 포스코GY솔루션 본사 정도경영실

온라인, 전화, 방문접수, 각 사무실 소리함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윤리, 인권, 공정거래 신고

포스코GY솔루션은 임직원의 반부패 및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행위와 불공정한 업무처리,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요구 및 비리사실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성심성의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리, 인권, 공정거래 신고

포스코GY솔루션은 임직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포스코GY솔루션 임직원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 폭행등의 횡포를 부리는 행위
- 포스코GY솔루션 임직원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포스코GY솔루션 임직원이 불안전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행위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신고내용은 빠른 시일 내(최대2주) 처리하여 원하는 경우 e-mail로 회신드립니다.

신고 된 내용은 비밀과 신분보장이 이루어지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퇴폐/음란/욕설이나 본 게시판과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게시물을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 된 내용은 비밀과 신분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일을,

멈추지 않고,

제대로 한다!